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29
----------	------

제출년월일 : 2014. 3. .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지원(납부) 범위와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편의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급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2조)

- 단독주택 →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나. 보조금 지원 한도 규정 삭제(안 제6조)

- 일반 : 시설분담금의 50% /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 수급자 : 시설분담금 전액 / 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다. 시설분담금 전액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6조의 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로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일 때

라. 지원대상 선정 기간 명시 규정 삭제(안 제8조)

-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삭제

마. 보조금 지급 방법 변경(안 제9조)

- 변경 전 : 시장 → 보조사업자
- 변경 후 : 시장 → 보조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도시가스사업자

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12조)

- 담당업무 국장 ⇒ 담당업무 과장

사. 위원회의 서기 규정 삭제(안 제14조)

- 간사와 서기 ⇒ 간사만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

(1) 입법예고 (2014.1.10.~1.30.)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완료

(3) 부패영향평가 : 심사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심사완료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단독주택)와 제2호(공동주택) 중 나목(연립주택), 다목(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추가적으로”를 각각 “추가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본관”을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면 본관”으로, “지역은 시장이나 위원회에서 인정하면 공사비의”를 “지역의 공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불구하고 순수”를 “불구하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보조금 지원 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충청북도 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보조사업자에게는 「충청북도 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 가스 공급 규정」”으로,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수급자가구”를 “수급자 소유의 주택에 설치할 때”로,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를 “받으면”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시가스 관로공사 준공 전에”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사업자에게 내고, 사업자는 해당 세대의 위임을 받아 설치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붙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을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신청 · 교부절차 및”을 “제8조와 제9조에 근거하여 신청 · 교부절차,”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시장이 되고”를 “부시장으로 하고”, “국장이 되고”를 “과장이 되고”로 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이 한다.

제14조제5항 중 “보고 등”을 “보고,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로,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받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급받았”을 “받았”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u>	<u>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u>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 략)</p> <p>6.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단독주택)와 제2호(공동주택) 중 나목(연립 주택), 다목(다세대주택)을 말한다.</p>
<p>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추가적으로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요금을 말한다.</p> <p>8. · 9. (생 략)</p> <p>제5조(지원 대상 등) ① (생 략)</p> <p>②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 할 수 있는 지역은 시장이나 위원회에서 인정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p>	<p>7. ----- <u>추가로</u> ----- ----- ----- ----- <u>추가로</u> ----- -----.</p> <p>8. · 9.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면 본관----- ----- 지역의 공사비----- -----.</p> <p>③ ----- <u>불구하고</u> -----</p>

현 행	개 정 안
<p>• 업무의 목적으로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p>	<p>----- ----- -----.</p>
<p>제6조(<u>보조금의 지원 규모</u>) ① <u>「충청북도 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u>의 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 분담금의 50퍼센트를 <u>지원하되</u>,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수급자가구</u>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u>지원하되</u>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6조(<u>보조금 지원 규모</u>) ① <u>보조</u> 사업자에게는 「<u>충청북도 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u>」 ----- <u>지원한다</u>. ----- <u>수급자 소유의</u> 주택에 설치할 때 ----- <u>지원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u>충주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p>	<p>제7조(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u>시장</u>----- ----- ----- ----- ----- ----- ----- -----.</p>
<p>제8조(지원 대상 선정과 절차) ① (p 생 략) ②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충주시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p>	<p>제8조(지원 대상 선정과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u>받으면</u> ----- ----- ----- -----</p>

현 행	개 정 안
법과의 불일치 여부, 사업내용과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
제9조(보조금 지급) 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u>도시가스 관로공사 준공 전에</u> 시장에게 도시가스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 ① ----- ----- <u>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50%</u> 를 사업자에게 내고, 사업자는 해당 세대의 위임을 받아 설치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붙여 ----- -----.
② 시장은 <u>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u> 관계 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u>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u> ----- ----- ----- -----.
③ <u>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신청 · 교부절차 및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③ <u>제8조와 제9조에 근거하여 신청 · 교부절차,</u> ----- ----- -----.
제12조(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u>부시장이 되고</u>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업무 <u>국장이 되고</u> , 위촉직 위원은	제12조(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부시장으로</u> <u>하고</u> ----- ----- -- <u>과장이 되고</u> -----

현 행	개 정 안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 5. (생 략)</p> <p>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③ (생 략)</p> <p><u>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한다.</u></p> <p><u>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u></p> <p>제16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제재)</p> <p>시장은 보조금을 <u>교부받은</u>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u>지급받았을</u> 때</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이 한다.</u></p> <p>⑤ ----- ----- <u>보고,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u> ----- <u>한다.</u></p> <p>제16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제재)</p> <p>----- <u>받은</u>-----</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받았</u>-----</p>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7.16>
- [전문개정 2011.8.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의안명 :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 관련조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3호, 제5호
- 비용추계서가 이미 작성 된 의안의 시행을 위하여 규칙 등을
입안할 때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
려울 때

3. 미첨부 사유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지원(납부) 범위와 방법 개선
으로 시민에게 편의와 혜택 제공

4. 작성자 : 경제건설국 경제과장 김태호